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현 행	개 정(안)
<p>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u>퇴직연금 사업자</u>입니다.</p>	<p>제2조 가입대상 -----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p>
<p>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② <u>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만기 시(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됩니다.</u></p>	<p>제3조 계약기간 ① <u>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u> ----- ----- ② <u>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합니다.</u></p>
<p><u><신 설></u></p>	<p>제3조의2 만기처리방법 ① <u>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u> 1. <u>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u> 2. <u>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 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자동 재예치일)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u> ② <u>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u> 1. <u>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u></p>

현 행	개 정(안)
<p>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p> <p>① (생략)</p> <p>② 퇴직연금정기예금의 이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변경된 이율은 매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p> <p><신설></p> <p>제7조 중도해지</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p>	<p>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됨)</p> <p>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p> <p>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사업자에게 ----- ----- -----</p> <p>③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p> <p>제7조 중도해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 행	개 정(안)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제9호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p> <p>1. ~ 9. (생 략) <신 설></p> <p>③ (생 략)</p> <p>제8조 분할지급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u>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u></p>	<p>----- ----- ----- -----, 제9호 및 제10호 ----- ----- -----</p> <p>1. ~ 9. (현행과 같음) 10.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 분할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 및 제2항 ----- ----- ----- -----</u> <u>인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의 경우 ----- -----</u></p>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입니다. <개정 2023.2.7.>

제3조 계약기간

①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개정 2023.2.7.>

②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합니다. <개정 2023.2.7.>

제3조의2 만기처리방법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2.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 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자동 재예치일)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본조 신설 2023.2.7.]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및 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차등 이율(이하 “약정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

② 퇴직연금정기예금의 이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변경된 이율은 매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2023.2.7.>

③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 <신설 2023.2.7.>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뺀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0호**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10.29., **2023.2.7.**>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개정 2018.10.29.>
9.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8.10.29.>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신설 2023.2.7.>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8조 분할지급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2023.2.7.>

제9조 기 타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_____ (인)
주 소 : _____

채무자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
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①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
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또는 그 배우자)가 기존주택 보유 사유가 인정되어 **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
하기 위하여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대출거래에 대한 추가 약정입니다.**

② 제1항의 추가 약정에 의해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
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주택에 각각 주민등록 유지(이하 ‘거
주’, 신규주택에 3개월 이내 전입 포함) 및 이를 입증하는 조건으로 기존 보유 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 (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건의 주택과 신
규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보유 주택

주택종류	소유자 (차주와의 관계)	주소
		거주자 :

② 신규주택

주택종류	소유자 (차주와의 관계)	주소
전입예정일		
		전입(예정)자 :

③ 채무자는 전입(예정)시기 및 저축은행이 정한 시기별로 제2항에 명시된 신규 주택에 채무자와 개
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
원의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제2조 제1항 기존 보유 주택 및 제2조 제2항 신규주택에 각각 거주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채무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	--

제4조 (거주 대상 주택 거주 의무 등)

- ① 채무자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2조 제1항의 기존 보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2조 제2항의 신규주택에 대출 실행일 기준 (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신규 주택에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거주하지 않으면 제2조 제1항 또는 제2조 제2항의 주택을 처분(명의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 ④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인 경우,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채무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거주 의무 등의 이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규주택에 대한 3개월 이내 전입의무 : 3개월 이내 전입 즉시
 - 2. 신규 주택 미거주에 따른 처분의무 :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
 - 3.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의 1주택 보유의무 :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제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4조 제1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2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3항의 거주 의무 또는 처분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4항의 1주택 보유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제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6.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주2)}하고 있는 경우
 주2)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7.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제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3)}의 주택 관련 대출^{주4)}이 제한됩니다.

주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4조 제1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2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3항의 거주 의무 또는 처분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4항의 1주택 보유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자동계좌이체약관】

현 행	개 정(안)
<p>제13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생 략)</p> <p>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u>등록</u> 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p> <p>③ ~ ⑤ (생 략)</p>	<p>제13조(계좌이동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등록 정보 등을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자동계좌이체약관

2003. 7.14 제정
2007. 8.29 개정
2008. 2.29 개정
2018. 1.31 개정
2019. 8.27 개정
2020. 4.24 개정
2020.12.10 개정
2022. 8. 30 개정
2023. 2. 7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지로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책임) 납부자의 자동이체 예금계좌의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로 인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개정 2020.12.10.>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상호저축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상호저축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상호저축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지로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2023.2.7.>

③ 납부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④ 납부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⑤ 제8조에 따라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출금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신설 2019.8.27>

제14조(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삭제>

제15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8.30>

② <삭제 2022.8.30>

③ <삭제 2022.8.30>

④ <삭제 2022.8.30>

⑤ <삭제 2022.8.30>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CMS출금이체약관】

현 행	개 정(안)
<p>제8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생략)</p> <p>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u>등록</u> 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p> <p>③ ~ ⑤ (생략)</p>	<p>제8조(계좌이동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등록</u> <u>정보 등을</u>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CMS출금이체약관

2003. 7.14 제정
2007. 8.29 개정
2008. 2.29 개정
2016. 8.11 개정
2018. 1.31 개정
2019. 8.27 개정
2020. 4.24 개정
2020. 12. 3 개정
2022. 8. 30 개정
2023. 2. 7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CMS 출금이체업무란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①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신청서(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2.3.>

②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③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제4조(이체 개시일)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CMS출금이체 처리) ①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상호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⑤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이체자금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포함)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3. 청구금액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상호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납부자의 계좌원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7조(자동이체 취소) ①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②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①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2023.2.7.>

③ 이용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④ 이용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⑤ 제3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신설 2019.8.27>

제9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8.30>

② <삭제 2022.8.30>

③ <삭제 2022.8.30>

④ <삭제 2022.8.30>

⑤ <삭제 2022.8.30>

제10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핀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현 행	개 정(안)
<p>제14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생 략)</p> <p>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 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 r), 애플리케이션에 출금이체 <u>등록</u> <u>정보</u>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 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 니다.</p> <p>③ ~ ⑤ (생 략)</p>	<p>제14조(계좌이동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등록</u> <u>정보</u> 등을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펄뱅크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2019. 8.27 제정
2020. 4.24 개정
2020. 12.3 개정
2022. 8. 30 개정
2023. 2. 7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펄뱅크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펄뱅크”이란 기업체(Firm)가 원하는 서비스 종류, 전송방법, 형태, 수수료, 자금예치 등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전산시스템을 VAN망을 통하거나 직접 연결(전용회선)하여 기업체의 금융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펄뱅크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③ “납부자”란 자동이체를 통해 각종 요금을 납부하거나 자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자로서, 이용기관의 고객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의 출금청구 또는 납부자의 송금요청에 따라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자동납부 : 이용기관의 출금청구에 따라 납부자의 계좌에서 각종 요금을 출금하여 해당 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
2. 자동송금 : 납부자와 참가기관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등록된 납부자의 출금계좌에서 지정 수취계좌로 주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제3조(자동이체 신청)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상호저축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개정 2020.12.3.>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단,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은 이용기관이 합니다.

제4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자동이체 납기일)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나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과실책임) ① 상호저축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납부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종합통장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지정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상호저축은행 출금 시점의 예금 잔액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자동이체 해지) ① 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요청 시 동일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 여러 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납부자는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 상호저축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상호저축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상호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기관에 신청 시 약관 적용) 제3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3조(이용수수료)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수수료는 상호저축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내에서 상호간 계약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4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상호저축은행 펌뱅킹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출금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개정 2020.4.24., **2023.2.7.**>

③ 납부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개정 2020.4.24.>

④ 납부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개정 2020.4.24>

⑤ 제3조에 따라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출금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8.30>

② <삭제 2022.8.30>

③ <삭제 2022.8.30>

④ <삭제 2022.8.30>

⑤ <삭제 2022.8.30>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현 행	개 정(안)
<p>제3조(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p>	<p>제3조(이용대상) ----- 19세 ----- ----- ----- -----</p>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19. 8. 29.

개정 2020.12. 3.

개정 2021. 5. 14.

개정 2022.11. 10.

개정 2023. 2. 7.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21.5.1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하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10.>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1.5.14.>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가.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은행의 경우 구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상호금융기관의 압류·추심,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다. 우체국의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 세금우대계좌,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

라. 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상품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즉시 잔고출금 불가한 CMA계좌, 유효 계약상품 보유계좌 등의 계좌

4. “활동성계좌”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 “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14.>

6.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신설 2022.11.10>

7.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호 체하 2022.11.10.>

8.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호 체하 2022.11.10.>

9.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호 체하 2022.11.10.>
10. “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호 체하 2022.11.10.>
11.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 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6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신설 2021.5.14.> <호 체하 2022.11.10.>
12.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를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 <호 체하 2022.11.10.>
13.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 <호 체하 2022.11.10.>
-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14.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1.10.> <호 체하 2022.11.10.>
15.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신설 2021.5.14.> <호 체하 2022.11.10.>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21.5.14.>

제3조(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3.2.7.>

제4조(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10.>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3.>

제6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3.>
-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정 2021.5.14.>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5.14.>

제7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조 체하 2021.5.14.>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

제9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1.10.>

제10조(조회) <조 체하 2021.5.14.>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10.>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14., 2022.11.10.>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제11조(잔고이전·해지) <조 체하 2021.5.14.>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14.>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 제1항에 따라 잔고이전·해지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카드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5.14.>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에·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14.>

⑥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즉시출금이 불가능한 CMA평가금액이 포함된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가 불가합니다. <신설 2021.5.14.>

제12조(계좌지급정지) ①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③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조 신설 2022.11.10.>

제13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조 체하 2021.5.14., 2022.11.10.>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1.5.14.>

제14조(서비스 이용수수료) <조 체하 2021.5.14., 2022.11.10.>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제15조(약관의 변경) <조 체하 2021.5.14., 2022.11.10.>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조 체하 2021.5.14., 2022.11.10.>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②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1.10.>

③ 금융투자회사,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부 칙 (2020.12.3.)

이 약관은 2020.12.2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5조, 제6조는 2020.12.1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5. 14.)

이 약관은 2021. 5. 3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4조, 제9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2021. 7. 15.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 11. 10.)

이 약관은 2022. 11. 1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2. 7.)

이 약관은 2023. 3. 30.부터 시행합니다.